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책임근재
기출 및 예상문제 풀이집

#핵심쟁점 약술 & 사례

이명길 지음



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2교시에 치뤄지는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종목을 알아가는 흥미롭지만, 학습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과목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이라는 생소한 법률적인 책임과 동시에 약관상의 면부책을 판단하여 실제 지급보험금을 산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손해사정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해마다 팽창되어가는 책임보험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지속적으로 책임보험 영역은 손해사정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시험은 사례형 보험금 면부책과 산출과정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조립해서 맞춰 가야하며, 그 해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약술형 문제로 출제하는 시사적인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행된 시험의 패턴을 보면 실무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실제 보험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될 만한 사건 또는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사례로 출제되는 것으로 볼 때 이론적인 무장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보험금의 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을 알고 있는지를 증시하여 출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과거 1. 사례문제의 출제 유형을 분석하는 동시에, 과정 점수를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며, 2. 약술에서 표현해야하는 목차와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시간 내에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문제의 흐름을 익히고 과거 기출문제 사례와 약술을 구분하여 학습함으로써 빠르게 이 과목에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자신감을 선물해 줌으로써 책임보험을 전략 과목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여 출제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서 몇 번을 경험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영점사격도 실시하지 않고 총만 들고 나가는 격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연한 자세로 시험에 임함으로써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면 실제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다루어질지에 대한 스스로의 예측이 가능해 지는 신비로운 경험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와 병행하고 시간을 쪼개서 수험생활을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합격생의 다수가 시험이 끝나고도 가장 혼란스러워한 본 과목을 **기본과정 - 기출정복 - 약술, 사례준비**로 구성된 본 교재를 통해 학습시간을 줄여주고 당당히 합격에 이를 수 있는 2교시 과목의 바이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근재보험 과목을 저와 함께 해주신 수험생들께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합격증서를 받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이명길** 드림

■ 책임근재보험 이론과 실무 출제 경향 분석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I. 배상책임보험											
1. 법률상 배상책임	과실, 무과실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									
	특수불법행위책임			○				○			
	특별법		○						○	○	
	기타(소멸시효)	○				○		○			
2. 손해액 산정	휴업보상, 치료비			○	○		○	○			○
	복합장해		○	○	○			○		○	○
	일실퇴직금		○				○				
	개호비						○			○	○
3. 배상책임 약관	일반론	○		○			○		○	○	
	의무배상책임보험		○	○	○	○	○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	○	○	○	○	○	○
	개인배상책임보험				○			○			
	전문배상책임보험	○			○				○		○
	영문배상책임보험	○				○	○	○	○		○
	기타(의무, 특별, 비용)		○	○			○		○	○	○
II. 근로재해보장책임보험											
1. 근재 일반	법 제도										
	근로자, 근로계약				○		○				
	안전배려의무			○							
	업무상 재해						○				
	평균, 통상임금	○						○			○
	장해의 조정						○				○
2. 근재 약관	국내근재보험		○	○	○	○					
	해외근재보험			○				○			
	선원근재보험	○			○				○		○
	사용자배상책임		○			○	○			○	○
	기타(특별약관외)	○			○	○	○		○		○

[배상책임보험]

구분	유형	내용	기출		
법률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4,23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규정, 소멸시효의 개념, 취지, 기산점, 중단	18		
	과실, 무과실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책임법리 •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비교 	23		
	특수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5~759조 법률 규정 책임, 요건, 효과	16	
			• 특수불법행위 종류 및 내용		
			•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17
			• 동물점유자의 책임		20
			•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20
	특별법		• 구상권 행사	21,22	
			• 제조물책임법상 결합책임의 종류		
			• 제조물책임법 개정사항		
	의료과실책임		• 제조물책임 면책사유	15	
			• 제조물책임법 개정사항		
	의료과실책임		• 제조물책임 면책사유	21	
의료과실책임	• 의료과실의 정의 및 법률상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면책사유)	18			
환경오염책임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인과관계의 추정				
입증책임	• 입증책임의 정의 및 전환의 법적 취지				
징벌적배상책임	• 징벌적배상책임의 개념 및 특징, 보험에서 담보 여부				
손해액 산정	일반원칙	• 산정 기준시점, 손해 3분설, 손해배상금의 책임 범위			
	소득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의 소득 산출방식 • 사업소득자의 수입, 필요경비, 기여도 등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익 산정방법 	14 23		
	복합장해율	• 기왕증 기여도, 기왕장해, 중복장해 산정	15~22		
	일실퇴직금	• 사망, 장애보험금 산정시 일실퇴직금 계산	15.19		
	개호비	• 개호비 산정산식 및 지급기간	19		
	치료비(보조구)	•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및 중간이자 공제	16		
	생활비공제	• 월현실소득액 산정시 생활비공제			

구분	유형	내용	기출
책임보험 이론	책임보험 담보범위 담보기준	• 법률상배상책임과 계약상가중책임 등 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의 비교(필요성)	
		•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과 국문영배책과 의사배책을 구분 설명	14
		•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 보험의 의의 및 장단점 비교	16
		• 보고기간연장담보(ERP)의 종류와 설정대상계약 조건 및 필요성	19
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범위	• 국문영업배책과 C.G.L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지급한도	14
	보험금 분담	• 보험금 분담의 개념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분담방법	18
	피해자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의 법적 성질, 행사 시 효과 (보험자의 항변권)	14
	타보험조항	• 국문영업배책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 분담조항	22
		•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Clause) 약술	14
	대위권	• 제3자에 대한 대위권 설명 및 국문 영배책에서의 규정된 대위권	21
	사고통지, 손해방지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통지 사항 및 게을리 한 경우 효과	
	손해방지의무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 서술	15
	합의, 절충	• 보험자가 대행하는 업무 등	17
	보통약관 용어정의	• 1회의 사고의 정의 등	
책임보험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	• 보상하는 손해 및 책임근거	23
	도급업자(발주자)	•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	
		• 도급계약에서의 주체별(도급인, 수급인)의 법률상배상책임	
		• 일부공사 특별약관의 보상대상 및 범위	
	학교경영자	• 보상하는 손해와 학교업무의 범위	15
	구내치료비	• 보상하는 손해와 취지, 면책사유	
		• 영문C.G.L약관의 Medical Payment에 대해 약술	23
	오염사고추가	• 오염사고 추가특약과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보관자배상책임	• TPL에서의 담보하는 특약과 추가특약에서 담보기준 등 비교		
기타	• 차량정비, 경비업자, 건설기계업자, 물적손해확장보장, 교차배상 책임, 드롭다운 조항		

구분	유형	내용	기출
전문인	의사 및 병원	• 의료과실배상책임조항에서 담보하는 의료사고의 정의, 면책사유	18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적용되는 책임법리	
		•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담보위험	23
		•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23
의무	가스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주체, 담보하는 가스사고	18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면책사유	18
		• 후유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 유형 9가지 및 1인당 지급	19
	화재	• 신배책, 다중이배책, 재난배책의 보상손해, 가입한도, 책임법리 등	17
		• 신배책 특약의 사망 실손해액 규정	17
		• 특수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약관상 타인의 범위, 지급기준	21
	선박	•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 및 구조비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19
		• 유도선, 선주, 낚시어선 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	
		• 추가특약 3가지 등	22
		• 뚜렷한 정원초과 보상 (안분)	
	체육시설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사고 보상	21
	청소년수련시설	• 보상하는 손해, 수련활동의 정의 및 가입대상	
	어린이놀이시설	• 보상하는 손해, 담보위험, 보상한도 등	20
환경오염책임	• 입증책임, 보상하는 손해 및 담보기준		
생산물	생산물	• 생산물의 정의, 보상하는 사고, 면책사유	
개인	일상배상	• 가족 일배책의 피보험자	17
		• 가족, 자녀 일배책 특약의 피보험자, 보상하는 손해, 면책사항	
영문	C.G.L	• 국문영배책 보통약관과 C.G.L 비교, 보상하는 손해, 지급한도	14
		• section I 담보 손해(보상하는 손해, 면책사항)	
		• 국문 구내치료비 특약과 영문 Medical Payment	23
		• section 별 담보위험과 범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구분	유형	내용	기출
근재보험 기본이론	책임법리	• 근로자 업무상재해 사업주의 보상 책임	18
		• 선원법 유족보상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21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재해보상에서 정한 일시보상	20
		• 재해보상의 조정	17,20
		• 요양의 범위	20
	근로자	•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 특수형태근로자의 개념 및 범위, 적용특례 약술	17,21
		• 안전배려의무	16
	업무상 재해	• 산재법 재해의 개념 및 시행령의 재해 유형별 기준	19
		•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 선원법상 직무중, 승무중 직무외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와 보상책임	22
	임금	• 평균임금의 개념 설명,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23
• 통상, 평균임금 약술 및 재해보상특약에서 휴업보상 기준		14	
• 선원법상 승선평균임금 및 산정방법			
• 산재법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20	
약관	보통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용자배상책임 (E.L)	• 재해보상 초과손해 보상	
		• 손해액 산정 범위(위자료, 중복장해, 개호비, 보상범위 등)	15~23
		• 사용자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	23
		• 근로자배상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의 책임근거	
• 사배책 청구권 소멸시효	18		
선원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W.C)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 보상	15,23
		• 직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	17
		• 승무 중 직무외 재해의 보상 범위	
		• 선원의 행방불명 보상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약의 보상 범위	21
해외, 선원	비업무상 확장추가	•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	23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W.C) 재해보상(W.C) 확장추가	• 국내근로자, 선원근로자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 비교	19
		• 근로기준법, 선원법 근로자재해보상 지급기준 (개호비)	20
		• 요양특례, 이송비용지급	22
		• 해외근재보험 추가특약 중심의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	16

목 차

PART 01 책임보험

CHAPTER 01	기본학습문제	2
CHAPTER 02	기출약술문제	32
CHAPTER 03	기출사례문제	64
CHAPTER 04	준비약술문제	124
	1.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124
	2.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126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책임	127
	4.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128
	5.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29
	6.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130
	7.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의 종류	131
	8.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	132
	9. 의료과실책임과 책임법리	135
	10. 징벌적 배상책임(Punitive Damage)	137
	11. 의료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139
	12. 손해배상금의 책임범위	140
	13. 중간이자 공제	141
	14. 기왕증상계, 과실상계, 손익상계	142
	15. 기초, 초과, 포괄배상책임 보험 및 DIC Policy	143
	16.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144
	17.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made basis policy)	145
	18. 보상한도액(L.O.L : limit of liability)	147
	19. 자기부담금(Deductible)	148

목차

20.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149
21. 피해자 직접청구권	150
22. 타보험조항	152
23. 청구권대위	153
24.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담보위험과 법률상 책임 근거	155
25.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156
26.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157
27.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	158
28.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160
29.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161
30.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163
31. 오염사고 특별약관	165
3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166
33.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판매인 특별약관	169
34.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170
35.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173
36.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75
37.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	177
38. 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178
3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80
40. 재난배상책임보험	182
41.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184
42. 선주 및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	186
43.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187
44.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188
45.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189
4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190

47.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191
48.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192
49.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193
50. 맹견 배상책임보험	195
51.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C.G.L)	196
52.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영문 CGL의 차이점	200

CHAPTER 05 연습사례문제	202
--------------------------------	------------

PART 02 근재보험

CHAPTER 01 기본학습문제	228
--------------------------------	------------

CHAPTER 02 기출약술문제	249
--------------------------------	------------

CHAPTER 03 기출사례문제	263
--------------------------------	------------

CHAPTER 04 준비약술문제	289
--------------------------------	------------

1. 근로자해해보장책임보험의 약관 구성	289
2. 근로자해해보장책임보험의 책임법리	290
3. 안전배려의무	291
4. 노무제공자	292
5. 업무상 재해	293
6. 임금	294
7. 평균임금	295
8. 통상임금	296
9.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의 담보범위	297

목 차

10.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	298
11. 선원법의 재해보상	299
12. 산재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재해보상기준 비교	301
13. 요양보상의 제한 및 특례	302
14.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303
15.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수급권자 순위	305
16. 민법상 상속순위	306
17.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 공제	307
18. 근재보험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	308
19. 근재보험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310
20. 일시보상	311
21. 근재보험 장애등급의 조정과 장애의 가중	312
22. 근재보험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별약관	313
CHAPTER 05 연습사례문제	315

PART 01

책임보험

CHAPTER

01

기본학습문제

기본 1 대위책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관광회사는 B보험사와 여행업자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손님 갑(甲)은 ○○ 홈쇼핑을 통해 기획여행상품 「사이판골드」을 구입하여 사이판 C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기가 있는 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요추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문제 A관광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풀이

1. 법정대위책임

타인인 가해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대위책임이라고 한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2. 약정대위책임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방의 책임을 타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
도급계약, 엘리베이터 보수계약,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다.

3. 법률상 배상책임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약관상 배상책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약관(영문)]

Risk : Professional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out of the insured's Negligent Errors & Omissions in rendering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services as Travel Agents

(피보험자인 여행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태만, 누락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2) TERMS & CONDITIONS

17) Claims Co-operation Clause(손해처리협조 특약)

※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협상을 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특약

5. 쟁점사항 검토

C 리조트는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의하면 여행자에게 부대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 외에 수영장을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에 관한 부수적 의무도 부담하게 되며, 민법 제750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다.

기본 2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는 B보험사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교회체육대회에서 만 11세 아들 C는 축구공 놀이 중 골대 옆에 있던 만 11세 D를 맞춰 치아를 파절케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때 A는 운동회가 열리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문제 A와 B보험사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풀이

1. 법률상 배상책임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3)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관상 보상책임

-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쟁점사항 검토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 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교회 측에서 주최, 가해자의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본 3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소유자 A의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본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갑(甲)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이 간판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임차인 B가 설치하였으며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소유자 A와 임차인 C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풀이

1. 법률상 배상책임**(1)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공작물의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중간과실)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무과실책임)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쟁점사항 검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임차인 B가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 갑(甲)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기본 4 공동불법행위책임

○○지방법양청으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일부를 무상 대부받은 후 A로부터 부두용 크레인을 제작·공급받아 B에게 부두를 전대하는 동시에 크레인도 임대하였다. 2007. 10. 20.이 사건 크레인의 작동 중 좌측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boom)이 추락하고 추락한 붐에 의하여 광양항 부두에 정박한 △△회사 소속 선박의 선체 및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의 크레인 제작상의 과실과 B의 크레인 관리·운용상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판결은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문제 A, B의 보상책임을 서술하십시오.

풀이

1. 공동불법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 중에는 연대책임설도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부진정연대책무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등).

2. 부진정연대책무

부진정연대책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3. 연대책무와의 차이점

- (1)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연대책무와 같으나,
 - ① 부진정연대책무자 상호 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 ② 채무자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좁으며,
 - ③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특히 부진정연대책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연대책무는 연대책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기본 5 소급담보일자와 보고연장기간

- 피보험자A: 의사배상책임보험, (보고연장기간 설정)
- 보험기간: 2021.1.1.~2021.12.31,
- 소급담보일자: 2020.1.1.
-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2021. 12. 30일에 발생되어 2022. 6. 1일에 보험회사에 통보되고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2022. 9. 1.일 경우 보험회사의 소급담보일자와 보고연장기간, 보상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풀이

1. 소급담보일자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담보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로 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내, 즉 보험시기로 부터 보고연장기간 사이에 제기되어야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간 연장담보기간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때 사고 발생일과 손해배상청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다면 moral-risk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급담보일자를 설정하여 담보를 제한하고 있다.

2. 보고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 ERP)

(1) 의의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달리 배상청구기준증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와 최초의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하는데,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최초의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의 보고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2) 보고연장기간이 적용되는 대상 계약의 조건

- ①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 ②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기준으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 ③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3) 보고연장기간의 종류

① 단기 자동연장담보기간(Mini Tail)

소급담보일자와 만기일 사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과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② 중기 자동연장담보기간(Mid Tail)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의 중기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된 후,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의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③ 선택 보고기간연장담보(Full Tail)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만기일 다음날 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있더라도 기간의 제한없이 모두 담보한다.

3. 보상책임

사고는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료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은 보고 연장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만 담보하므로 4개월이 넘어서 통보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 6 적극적 치료비 (향후치료비)

피해자 A는 치아보철을 시행 후 B보험사에 치아보철비용을 청구하였다.

1회 치아보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였다. 이때 치아보철 비용은 200만원, 교체주기 10년, 기대여명 35년, 피해자 과실 50%일 때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 경과연수에 따른 H 계수 : 10년(0.5), 20년(0.4), 30년(0.3)

풀이

1. 산식

향후치료비 현재액 = 1회 향후치료비 × 경과연수 H계수의 합 × [1 - 피해자 과실율(%)]

2. 풀이

200만원 × (0.5 + 0.4 + 0.3) × (1 - 50%) = 1,200,000원



상기 문제에서 1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 (1 + 0.5 + 0.4 + 0.3) × (1 - 50%) = 2,200,000원

기본 7 적극적 치료비 (보조구비)

피해자 A는 하지의 영구장해 진단 후 의사 진단에 따라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여 B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때 휠체어 비용은 100만원, 교체주기 10년, 기대여명 35년, 피해자 과실이 30% 일 때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 경과 연수에 따른 H 계수 : 10년(0.5), 20년(0.4), 30년(0.3), 40년(0.2)

풀이

1. 산식

보조구비 현가액 = 보조구비 × 경과년수 × H계수의 합 × [1 - 피해자 과실율(%)]

2. 풀이

100만원 × (1 + 0.5 + 0.4 + 0.3) × (1 - 30%) = 1,540,000원

Tip

보조구 :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 보조기구
그 현가와 교체 횟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8 적극적 치료비 (개호비)

피해자 A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되는, 1인 개호의 진단을 받았다. 이때 도시일용 보통인부노임은 10만원이며, 여명까지의 H계수는 100, 피해자 A의 과실이 50%일 때 개호비를 산정하시오 (계산시 1달은 30일)

풀이

1. 산식

보통인부노임(일) × 365일/12 × 개호인 수 × 개호기간(월)의 해당 H계수 × [1 - 피해자과실율(%)]

2. 풀이

100,000원 × 365일/12 (30일) × 1인 × 100 × (1 - 50%) = 150,000,000원

기본 9 중복장해율

- (1) 중복장해 :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는 것 (복합장해율)
- (2) 기왕증 공제: 기왕증이 장해발생에 영향이 있었다면 그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
- (3) 기왕장해: 이미 장해가 있는 경우 중복장해 산식과 동일하게 산출 후 차감
- (4) 기왕증·기왕장해: 기왕증을 적용한 장해율에 중복장해 산식과 동일하게 산출 후 차감

풀이

(1) 중복장해 : $A + (100 - A) \times B\%$

- ① 장해율: 족관절 10%, 고관절 20%, 척추체 30%
 - $10\% + (100 - 10)\% \times 20\% = 28\%$
 - $28\% + (100 - 28)\% \times 30\% = 49.6\%$
- ② 장해율: 족관절 10%(한시2년), 완관절 10%
 - $10\% + (100 - 10)\% \times 10\% = 19\%$
 - 장해판정일~2년까지: 19%, 2년이후~가동연한: 10%

(2) 기왕증 : 신규장해율 \times (100 - 기왕증 비율)

- ① 척추체 30%(기왕증 50%)
 - $30\% \times (100 - 50)\% = 15$
- ② 견관절 30%(기왕증 70%), 주관절 10%
 - $30\% \times (100 - 70)\% = 9\%$,
 - $9\% + (100 - 9)\% \times 10\% = 18.1\%$
- ③ 척추체 50%(기왕증 50%), 슬관절 10%, 고관절 20%
 - $50\% \times (100 - 50)\% = 25\%$,
 - $25\% + (100 - 25)\% \times 10\% = 32.5\%$,
 - $32.5\% + (100 - 32.5)\% \times 20\% = 48\%$

(3) 기왕장해 : 복합장해율 산정방식 - 기왕장해

- ① 척추체 50%(기왕장해), 족관절 10%
 - (법원 판결)
 - $50\% + (100 - 50)\% \times 10\% = 55\%$
 - $55\% - 50\%(기왕) = 5\%$ (중복장해-기왕장해)
 - (일반 적용)
 - $10\% \times (100 - 50)\% = 5\%$

② 견관절 20%(기왕장해), 뇌 30% (한시5년), 척추체 30%

$$\bullet 20\% + (100 - 20)\% \times 30\% = 44\%$$

$$44\% + (100 - 44)\% \times 30\% = 60.8\%$$

$$60.8\% + (100 - 60.8)\% \times 30\% = 72.56\% - 20\% = 52.56\%$$

장해판정일~ 5년까지: 52.56%

5년이후~가동연한: 44%

기본 10 예상 총퇴직금

(4) 기왕증·기왕장해

척추 30%(기왕증 50%), 슬관절 20% (기왕장해)

$$\bullet 30\% \times (100 - 50\%) = 15\%, 15\% + (100 - 15)\% \times 20\% = 32\%$$

$$32\% - 20\% = 12\%$$

기본 10 일실퇴직금

백화점 주차장에서 보행 중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와 지나가던 A를 충격하여 부상을 당한 사고일 때 전제조건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시오.

[전제조건]

- 갑보험회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특별약관)
- 사고일자 : 2020. 3. 1
- 생년월일 : 1980. 3. 1
- 입사일자 : 2010. 3. 1 (정년 60세)
-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 피해자 과실: 30%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일실퇴직금 산정 시 현가율: $[1 / (1 + 0.05 \times \text{잔여 재직기간})]$ 으로 계산

풀이

1, 산식

$$[(\text{예상 총퇴직금} \times \text{사고당시 현가율}) - \text{기근속 퇴직금}]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text{과실상계}$$

2. 일실퇴직금

(1) 산정기간

- ① 총 재직가능연수 : 30년
- ② 기재직 연수 : 10년
- ③ 잔여 재직가능연수 : 20년

(2) 전제조건 산출

- ① 예상 총 퇴직금 : 300만원 × 30(년) = 90,000,000원
- ② 기근속 퇴직금 : 300만원 × 10(년) = 30,000,000원

(3) 일실퇴직금 산출

$$\{ 90,000,000\text{원} \times [1 / (1 + 0.05 \times 20\text{년})] - 30,000,000\text{원} \} \times 100\% \times (1 - 0.3) = 10,500,000\text{원}$$

기본 11 보험금 분담 (의무+의무)

2023년 11월 30일 12시경 강원도 소재 △△LPG충전소(주)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에 충전하고 있던 손님 강○○가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아래에 주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계약별로 분담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LPG충전소(주) 보험가입사항]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보상한도액
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보상한도액

[전제조건]

- 손님 강 ○○ 과실 : 20%
- 일실수입(현재) : 100,000,000원
- 일실퇴직금(현재) : 50,000,000원
- 위자료 및 장례비 : 70,000,000원 (과실 반영 후 합의된 금액)
- 피해자 긴급호송비용: 10,000,000원

풀이

1. 법률상 배상책임

피보험자 □□ LPG충전소(주)의 가스폭발사고로 손님 강 ○○가 신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보험금 분담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둘 이상의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손해액 한도로 분담하여 지급한다.

이때, 약관상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에 따라 갑, 을 보험회사는 분담하여 지급한다.

3. 손해액 산정

(1) 손해배상금 : $150,000,000\text{원} \times (1-20\%) + 70,000,000\text{원} = 190,000,000\text{원}$

(2) 비용 : 10,000,000원, 긴급호송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전액 지급

(3) 합계 : 200,000,000원

4.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1) 각 사의 독립책임액

① 갑 보험회사 : $\text{Min} [1.9\text{억원}, 8\text{천만원}] + 1,000\text{만원} = 90,000,000\text{원}$

② 을 보험회사 : $\text{Min} [1.9\text{억원}, 1.5\text{억원}] + 1,000\text{만원} = 160,000,000\text{원}$

(2)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독립책임액 비례분담을 적용한다.

(3) 각 사 지급보험금

① 갑 보험회사 : $200,000,000\text{원} \times 90,000,000\text{원} / 250,000,000\text{원} = 72,000,000\text{원}$

② 을 보험회사 : 128,800,000원

기본 12 보험금 분담 (의무+임의)

A백화점에서 승강기사고로 방문객 B가 중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원인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관리상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보험가입과 전제조건을 보고 손해액 산정 및 보험회사별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A백화점 보험가입사항]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갑(甲)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보상한도액
을(乙)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시소유 특약	1인당 1억/ 1사고당 2억

[전제조건]

- 방문객 B
- 기왕치료비: 15,000,000원
- 일실수입(현가) : 150,000,000원
- 일실퇴직금(현가) : 30,000,000원
- 위자료 및 장례비 : 70,000,000원 (과실반영 후 합의된 금액)
- 피해자 긴급호송비용: 10,000,000원

풀이

1. 법률상 배상책임

피보험자 A백화점은 시설 소유,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방문객 B의 신체 손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보험금 분담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둘 이상의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손해액 한도로 분담하여 지급한다.

이때, 손해액을 산정 후 의무보험인 갑(甲)보험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초과 손해액을 임의보험인 을(乙)보험회사는 분담하여 지급한다.

3. 손해액 산정

(1) 손해배상금 : 265,000,000원

(2) 비용 : 10,000,000원 , 긴급호송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전액 지급

4. 지급보험금

(1) 갑 보험회사

Min [265,000,000원, 95,000,000원 (부상+사망 보상한도액 합산금액)]+1,000만원
= 105,000,000원

(2) 을 보험회사

Min [265,000,000원- 95,000,000원, 1억원] = 1억원

기본 13 보험금 분담 (의무+임의)

식당을 운영하는 A의 주방에서 직원 B의 과실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여 가스가 발생하여 손님 C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손해액 산정 및 각각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 A의 보험가입사항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보상한도액
을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1인당 1억, 1사고당 2억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0만
병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1인당 2억, 1사고당 2억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0만

[전제조건]

- 월평균 현실소득액: 360만원 (평균임금: 12만원, 도시일용 보통인부노임 동일 적용)
- 치료비 : 20,000,000원
- 위자료 : 100,000,000원
- 상해급수 : 2급, 8급
- 장해등급 : 8급, 9급
- 장해율: 60% (복합장해율 반영)
- 호프만계수(H): 사고일~치료일 (5), 사고일~정년(55), 사고일~가동연한 (105)
- 부상/장해 한도금액

부상	1급	2급	3급	7급
부상	3,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장해	15,000만원	13,500만원	12,000만원	6,000만원

풀이

1. 법률상 배상책임

피보험자 A는 직원 B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로 손님 C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 756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보험금 분담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둘 이상의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손해액 한도로 분담하여 지급한다.

이때,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의무보상에 따른 보상한도액 내 실제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초과액을 을, 병 보험회사의 임의보험에서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한다.

3. 손해액 산정

(1) 치료비 : 20,000,000원

(2) 일실수입

1) 휴업손해 : $3,600,000\text{원} \times 100\% \times 5 = 18,000,000\text{원}$

2) 장애 일실수입

① 치료종료~정년까지 : $3,600,000\text{원} \times 60\% \times 50(55-5) = 108,000,000\text{원}$

② 정년이후~가동연한 : $120,000\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60\% \times 50(105-55) = 79,200,000\text{원}$

③ 소계: 187,200,000원

(3) 위자료 : $100,000,000\text{원} \times 60\% = 60,000,000\text{원}$

(4) 합계 : 285,200,000원

4. 지급보험금 산정

(1) 갑 보험회사 (의무보험)

1) 부상 : $\text{Min} [38,000,000\text{원}, 1,500\text{만원}] = 1,500\text{만원}$

2) 장애 : $\text{Min} [247,200,000\text{원}, 6,000\text{만원}] = 6,000\text{만원}$

3) 합계 : 75,000,000원

(2) 을, 병보험회사 (임의보험)

1) 독립책임액

① 을 보험회사 : $\text{Min} [285,200,000\text{원} - 75,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1\text{억}] = 1\text{억원}$

② 병 보험회사 : $\text{Min} [285,200,000\text{원} - 75,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2\text{억}] = 2\text{억}$

2)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독립책임액 비례분담을 적용한다.

3) 지급보험금

- ① 을 보험회사 : 210,200,000원 × 1억/3억 = 70,066,667원
 ② 병 보험회사 : 210,200,000원 × 2억/3억 = 140,133,333원

기본 14 보험금 분담 (의무+임의)

‘갑’이 소유자인 15층 특수건물의 3층에 ‘을’이 임차하여 스터디카페를 개업하고 영업을 하던 도중 불상자가 침입하여 인화성 휘발류를 붓고 방화를 하여 그 화재와 가스로 인하여 스터디카페를 방문한 ‘갑의 배우자 정○○이 치료중 사망하게 되었으며 임차인 ‘을’의 아들 주○○이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별표〉

[보험가입사항]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종목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A	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종업원배상책임 부보장 추가특약	의무보상한도액
B	을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전제조건]

- 재해자 : ‘정○○’ (특수건물 소유자 ‘갑’의 사실혼 배우자)
 - 부상 치료비 : 10,000,000원
 - 부상 일실수익 : 5,000,000원
 - 월 현실소득액 : 3,000,000원, 남자 평균임금 25만원, 여자 평균임금 20만원
 - 취업가능기간 : 36개월
 - 호프만 계수: 36H (30)
 - 위자료 : 50,000,000원
 - 긴급호송비용 : 500,000원
 - 피해자 과실 : 10%
- 재해자 : ‘주○○’ (스터디카페 임차인 ‘을’의 성인 아들)
 - 부상급수 : 1급
 - 치료비 : 15,000,000원

- 부상 일실수익 : 10,000,000원
- 월 현실소득액: 3,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50%
- 취업가능기간: 200개월
- 호프만 계수: 200H (150)
- 위자료 : 80,000,000원
- 긴급처치비용 : 500,000원
- 피해자 과실 : 20%

- 문제**
- (1) A 보험회사의 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2) B 보험회사의 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3) 재해자 '정○○' 에게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 (4) 재해자 '주○○' 에게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 A 보험회사의 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풀이

1. 재해자 '정○○' (특수건물 소유자 '갑'의 사실혼 배우자)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치료 중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타인이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을 말하며 재해자 '정○○'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인에 해당된다.

2. 재해자 '주○○' (스터디카페 임차인 '을'의 성인 아들)

타인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B 보험회사의 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풀이

피보험자 “을”의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 사고는 불상자의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피보험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약관상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재해자 ‘정○○’에게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풀이

1. 손해액 산정

(1) 부상

부상보험금의 손해액은 치료비용만을 산정하며, 부상 일실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text{Min} [10,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10,000,000\text{원}$$

(2) 사망

$$\textcircled{1} \text{ 산식} = (\text{월 현실소득액} \times \text{취업가능기간}) + (\text{남자 평균임금} \times 100\text{일분})$$

$$\textcircled{2} (3,000,000\text{원} \times 36\text{개월}) + (250,000\text{원} \times 100\text{일분}) = 133,000,000\text{원}$$

2. 비용 : 500,000원

3. 지급보험금

$$(10,000,000 + 133,000,000) + 500,000\text{원} = 143,500,000\text{원}$$

4. 보험회사 보상책임

(1) A보험회사

재해자 ‘정○○’에게 143,500,000원을 지급한다.

(2) B보험회사

보상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

(4) 재해자 '주○○'에게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십시오.

풀이

1. 손해액 산정

(1) 부상

부상보험금의 손해액은 치료비용만을 산정하며, 부상 일실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Min [15,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2) 장애

① 산식= 월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가능기간

② 3,000,000원 × 50% × 200개월= 300,000,000원

③ Min [300,000,000원 , 150,000,000원] = 150,000,000원

2. 비용

500,000원

3. 지급보험금

15,000,000원 + 150,000,000원 + 500,000원 = 165,500,000원

4. 보험회사 보상책임

(1) A보험회사

재해자 '주○○'에게 165,500,000원을 지급한다.

(2) B보험회사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 15 완성작업위험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는 주차타워에 이상 작동이 발생된 것을 인계받고 관리업체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에 관리업체 직원이 센서 부위를 세척해 보라는 말을 듣고 작동 여부를 임의로 확인하는 도중 주차타워 내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여 주차 파레트와 리프트 사이에 협착하여 현장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손해배상금은 과실을 반영한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보상책임과 손해액을 산정하시오.

[보험가입사항]

- 피보험자 : △△ 산업
- 담보위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
 - 완성작업위험 특별약관 :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사고당 100만원
 - 도급업자 특별약관 : 1인당 1억, 1사고당 2억, 자기부담금 사고당 100만원

문제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약술하고 약관상 보상책임과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풀이

1.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

(1) 완성작업위험 담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 완성작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또는 작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보상책임 검토

상기 사고는 주차타워의 설치 및 보수가 완료된 후에 생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완성작업위험 담보에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3. 지급보험금

Min [5,000만원 - 100만원, 1억원] = 4,900만원

기본 16 도급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A건설(도급업자)은 B건설(수급업자)과 함께 빌딩 건설공사에 참여 중이다. B건설의 근로자 김○○은 비계공사 중 부주의로 지나가던 행인 박○○에게 상해를 입혔고 본인도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로 A건설은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문제

1. 근로자 김○○과 행인 박○○에 대한 보상책임은?
2.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추가로 가입된 경우 김○○과 박○○에 보상책임은?
3. 근로자 김○○이 A건설회사 시설 내에서 도어교체 작업을 하다가 A건설회사를 방문한 손님 최○○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책임은?

1. 근로자 김○○과 행인 박○○에 대한 보상책임은?

풀이**1. 근로자 김○○에 대한 보상책임**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수급인의 도급작업 중의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작업과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의 작업 중에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도급인이 수급인을 사용, 지휘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이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인 박○○에 대한 보상책임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이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추가로 가입된 경우 김○○과 박○○에 보상책임은?

풀이**1.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보험자는 피보험자(도급인)의 수급업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2. 근로자 김○○에 대한 보상책임

면책

3. 행인 박○○에 대한 보상책임

부책

3. 근로자 김○○이 A건설회사 시설 내에서 도어교체 작업을 하다가 A건설회사를 방문한 손님 최○○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책임은?

풀이

면책위험의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 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 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기본 17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발주자 □□건설은 A건설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건설은 신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촉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A건설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A건설 작업인부 이○○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또 다른 도급업체 C설비공사의 직원공사 근로자 김○○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회사	피보험자	담보위험
갑	□□건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을	A건설공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문제 각 보험회사의 이○○과 김○○의 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서술하시오.

풀이

1. 갑보험회사

(1) 법률상 배상책임

피보험자 □□건설은 노무도급인으로서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약관상 보상책임

피보험자의 도급업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약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을보험회사

(1) 법률상 배상책임

1) 근로자 이○○

피보험자 A건설공사는 근로자 이○○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자 김○○

A건설공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약관상 보상책임

1) 근로자 이○○

일부공사 추가특약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근로자 김○○

① 도급업자 특약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어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일부공사담보 추가특약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에게 입힌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기본 18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A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한 B업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던 중 사고로 <별표>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B업체는 H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1억원)에 가입하였다.

<별표>

- A의 손해배상금 (현가): 1억원
- B업체가 지출한 A의 긴급호송비용: 50만원
- A의 소송으로 인하여 B업체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200만원
- H보험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B업체의 소송과 관련한 협력비용: 30만원

문제 H보험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풀이**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1) 피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①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보험자는 이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

② 대위권 보전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 타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한다.

③ 협력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등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일당을 보상한다.

④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보상한도 이내에서 보상한다.

⑤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에 대한 가집행 정지나 압류해제를 위하여 공탁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공탁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보상한도 이내에서 보험자가 보상한다.

2. 지급보험금

Min [1억원 + 200만원, 1억원] + 50만원 + 30만원 = 1억 80만원



영문배책 : Min [법률상손해배상금 - Ded, 한도액(인당, 청구당) - Ded]
비용은 추가지급조항에서 별도로 지급 (단, 한도액이 정해지는 사례도 있음)

기본 19 제조물책임법과 징벌적 배상금

에어컨제조업체인 A전자가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에어컨 사용 도중에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금 중 2억원은 신체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3억원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에 따른 배상액으로 결정되었다. A전자는 B보험사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억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이다.

문제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중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액인 징벌적 배상금에 대하여 서술하고 B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금액을 산정하시오.

풀이

1. 징벌적 배상금

민사상 배상책임액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벌적배상금은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비행 또는 악의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손해액 보상 외에도 법원이 추가로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을 말한다.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되어 일부 법률 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취지

가해자의 악의적인 금전적인 징벌을 가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사회 계도적인 형벌로서의 기능을 한다.

3. 의의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등장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악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악의적, 의도적으로 결과를 용인하는 정도의 심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5. 기능

(1) 법 준수 기능

가해자를 민사적 처벌로 제재하므로써 법의 준수 효과를 강화한다.

(2) 제재적 기능

사회적 전시효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한다.

(3) 전보적 기능

법정 손해배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피해자를 위로한다.

6.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1) 법률규정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기준

① 고의성의 정도

②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③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⑤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⑥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⑦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7. B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Min [2억+3억, 5억]=2억원.

징벌적 배상금은 사회제도적 성격으로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20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

2022년 10월1일 해물누룽지탕의 종업원 갑은 누룽지탕을 주문한 손님 을에게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그릇을 옆질러 다리에 3도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날 다른 손님 병은 같은 뚝배기탕을 먹다가 장염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이때 모든 사고의 원인은 해물누룽지탕 측의 과실로 발생한바 < 별표 >를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별표>

[보험가입사항]

1) A보험회사: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1억원, 사고당 2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 피보험자: 해물누룽지탕
- 보험기간: 2022. 5. 1~ 2023. 3. 31

2) B보험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1억원, 사고당 2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 피보험자: 해물누룽지탕
- 보험기간: 2022. 1. 1~ 2023. 12. 31

구분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을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병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문제

1.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약술하시오.
2.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약술하시오.

풀이

1. A보험회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로 인한 손해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B보험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된 음식물로 인하여 제 3자의 신체에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부담하는 법률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2.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풀이

1. A보험회사

(1) 을

① 손해액 산정 :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② 지급보험금 : Min [4,000만원 - 50만원, 1억원] = 3,950만원

(2) 병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B보험회사

(1) 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2) 병

① 손해액 산정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② 지급보험금 : Min [300만원 - 50만원, 1억원] = 250만원

기분 21 영문배상책임 C.G.L

한국골프장에서 고객이 카트로 이동 중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장애를 입었다. 이때 사고 피해자는 1.8억원 (현가)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30%, 골프장 과실이 70%로 결정이 되었다 이때 한국골프장은 <별표>와 같이 보험가입이 되어있다.

<별표>

- A보험회사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1억)
- B보험회사 : 영문C.G.L (대인 1억, 대물 1억, 자기부담금 100만원)

문제

1. A, B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2. A, B 보험회사가 모두 영문C.G.L이고 보험가입한도가 4천만원, 1억원일 때 각사의 보상책임액은? (자기부담금 없음)

1.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풀이

1. B보험회사 (영문 C.G.L)
 $\text{Min} [1.8\text{억} \times (1 - 0.3) - 100\text{만원}, 1\text{억} - 100\text{만원}] = 9,900\text{만원}$
2. A보험회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1.8\text{억} \times (1 - 0.3) - 9,900\text{만원} = 2,700\text{만원}$
 $\text{Min} [2,700\text{만원}, 1\text{억원}] = 2,700\text{만원}$

2. A, B 보험회사가 모두 영문C.G.L이고 보험가입한도가 각각 4천만원, 1억원 일 때 각사의 보상책임액은? (자기부담금 없음)

풀이

1. **균등액 분담방식(Contribution by Equal Share)**
 각 보험자의 분담액은 보상한도가 낮은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균등액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조건이 동일하고 약관상 균등액분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손해액 산정

(1) $1.8\text{억} \times (1 - 0.3) = 1.26\text{억}$

(2) A보험회사: $\text{Min} [1.26\text{억원}, 4,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B보험회사: $\text{Min} [1.26\text{억원} - 4,000\text{만원}, 1\text{억원}] = 8,600\text{만원}$

CHAPTER

02

기출약술문제

약술 1 2014년 기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대하여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5점)

풀이

1.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① 손해방지비용
 - ② 대위권 보전비용
 - ③ 협력비용
 - ④ 소송비용
 - ⑤ 공탁보증보험료

(2) 지급한도(보상한도액: L.O.L : Limit of Liability)

1) 분할 보상한도(Split Limit)

대인 보상한도와 대물 보상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인 보상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① 1인당(Any One Person)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과 ② 1사고당(Any One Claim)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한다.

2) 포괄 단일 보상한도(CSL : Combined Single Limit)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하여 보상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하는 방식이다.

3) 총보상한도(Aggregate Limit)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총보상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보상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계약조건으로 보험기간 중 총보상한도 내에서 1인당 또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1) 보상하는 손해

1) Coverage A(Bodily and Property Damage)

타인의 신체손해와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2) Coverage B(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3) Coverage C(Medical Payments)

피보험자의 과실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구내에서 발생한 타인의 신체상해로 인한 치료 비용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2) 지급한도(보상한도액: L.O.L : Limit of Liability)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배상 (Combined Single Limit)으로 정하는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약술 2 2014년 기출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Coverage Trigger)를 약술하고,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국문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예시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풀이

1. 담보기준의 의미

보험기간과 관련하여 보상책임을 발생요건을 정한 것을 담보기준 Coverage Trigger라고 한다.

2. 담보기준의 종류

(1)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배상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보상책임을 인정된다. 상해, 화재, 근재, 자동차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져야하고, 보험사고는 소급담보일자로부터 보험계약 만료일 사이에 발생하여야 보상책임을 인정된다. 전문인, 생산물,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주로 사용한다.

(3) 손해발견기준증권(discovery basis policy)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 담보하는 증권으로 금융기관 종합보험, 현금 및 유가증권 도난보험이 대표적인 손해발견기준증권이다.

3. 담보기준 비교

(1)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증권으로 보상책임이 보험기간 중에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정된다.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재물보험 상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의사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증권으로 보상책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다.

- ① 손해사고(Occurrence)는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이후부터 보험기간만료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 ② 손해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Claims-Made)를 보험기간개시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
- ③ 그러한 사실이 보험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④ 만약,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연장보고기간 만료일까지 사이에 제기되고 보험자에게 통지된 배상청구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약술 3 2014년 기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풀이

1. 일반불법행위 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민법 제750조).

2. 일반불법행위의 기본원칙

과실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배상의무자는 자기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책임능력

불법행위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위법성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4) 손해의 발생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5) 인과관계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약술 4 2014년 기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10점)

풀이

1. 의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책임보험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는 권리이며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무자력으로 인한 파산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상법상 규정된 권리이다.

2. 법적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1)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의할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보험금청구권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와 연대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다. 보험금청구권설에 의할 경우,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에 한정된다.

(3) 판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술 5 2014년 기출

배상책임보험에서 일실수입의 개념 및 산정요인을 약술하고, 취업형태별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단, 취업형태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직자로 구분한다. (15점)

풀이

1. 개념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으로 인한 수입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휴업손해라 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상실수익액이라고 한다.

2. 일실수입의 산정요소

- (1) 월소득
- (2) 가동연한
- (3) 노동능력 상실률
- (4) 여명기간
- (5) 생활비 공제
- (6)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취업형태별로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방식

(1)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직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3개월간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계절의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산정대상 기간을 과거 1년으로 한다. 징구서류로는 급여(상여) 대장 1년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